##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622

발의연월일: 2025. 4. 7.

발 의 자: 어기구 · 이개호 · 박희승

오세희 • 박지원 • 소병훈

임호선 · 송옥주 · 주철현

김재원 • 이원택 의위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,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 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 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.

또한, 기후위기 고물가시대,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 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.

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, 계

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4 신설, 제6 조, 제8조, 제9조, 제9조의2 및 제9조의 3 신설, 제10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조의4(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) ①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,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둔다.
  - 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(이하 "수급조절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농수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
  - 2.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
  - 3.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
  - ③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

수 있다.

- 1. 회의 일시 및 장소
- 2. 출석위원
- 3. 심의내용
-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(이 하 "생산자단체등"이라 한다)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.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,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"생산자를"을 "생산자와 소비자를"로, "하한가격"을 "하한가격과 상한가격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"을 "생산량, 예상 수급상황 및 농가경영상황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협의하여야"를 "협의한 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시행

제9조제1항 본문 중 "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"를 "농산물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채소류 등의"를 "농산물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,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의 가격폭등으로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수매한 농산물의 판매
- 2. 생산자단체등, 저장업자, 도매업자·소매업자 등이 보유한 농산물의 판매 지원

- 3. 취약계층을 위한 농산물 이용권 지급
- 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협의"를 "협의한 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"로 한다. 제2장에 제13조의2·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의2(비축사업 관리)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(이하 "위탁사업자"라 한다)는 농산물 수입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, 수입 및 판매 계획, 공급업체선정,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위탁사업자로부터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당해연도 국영무역 수입농산물판매실적을 다음해 상반기까지 위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, 그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를 토대

로 실수요자, 생산자,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탁사업자는 통보받은 의견수렴 결과를 다음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반영·판매실적·사업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2(농산물가격안정제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,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[평년 가격(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. 이하 같다]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(이하 "농산물가격안정제도"라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품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

채소,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농산물가격안 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(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제16조의3(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)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
  - 2.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
  - 3. 차액의 지급비율
  - 4. 적정 재배면적,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
  - 5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선정 및 확정 주기
  - 6.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  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.
- 1.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워
- 2.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- 3.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
-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5조제1항제3호 중 "제9조의2제3항"을 "제9조의3제3항"으로 한다. 제5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13조"를 "제9조의3, 제13조"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

2의3.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

제9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6 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제5호 및 제5호의2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4호의2로 하고, 같 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
- 1.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5조의4(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)
	①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
	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
	<u>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</u>
	조절위원회를, 해양수산부에
	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
	<u>둔다.</u>
	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
	산물수급조절위원회(이하 "수
	급조절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
	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	1. 농수산물의 수급상황 판단
	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
	2.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
	결정에 관한 사항
	3.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
	절명령에 관한 사항
	4. 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급조
	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
	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
	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
	부치는 사항
	③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과

제6조(계약생산) ① · ② (생략)

<신 설>

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.

- 1. 회의 일시 및 장소
- 2. 출석위원
- 3. 심의내용
-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있다.
- ⑥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계약생산) ① · ② (현행 과 같음)
 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 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 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 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8조(가격 예시)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 물 생산자(이하 "생산자단체등" 이라 한다)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 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발생하는 생산 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.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 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하 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
- ⑦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,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및제5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가격 예시) ① 농림축산식 제8조(가격 예시) ① ------

\_\_\_\_\_

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 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 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 기 이전에 <u>생산자를</u> 보호하기 위한 <u>하한가격</u>[이하 "예시가격" (豫示價格)이라 한다]을 예시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,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(이하 이 조에서 "수산업관측"이라 한다) 결과, 예상 경영비, 지역별 예상 생산란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

<u>생산자와 소비자를</u>
<u>하한가격과 상한가</u>
②
<u>생</u>
산량, 예상 수급상황 및 농가경
<u>영상황</u>
③
<u>협</u> 의한

여야 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 시가격을 지지(支持)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 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4. • 5. (생략)

제9조(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 기호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 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수 있다. 다만,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.

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
<u>거쳐야</u>
4
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
보호 시책의 시행
4.•5. (현행과 같음)
제9조(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
ই) ①
<u> 농산물의</u>

- ② · ③ (생 략)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<u>채소</u> 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·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<신 설>

<u>⑤</u> (생 략) <신 설>

(2)		$\mathfrak{P}$	(혂행과	간은)
(4)	•	(U)	(11 %)	アロノ

④ -----<u>농산</u> 물의-----

-----.
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 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 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-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제9조의2(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농산물의 가격폭등으로 가 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수매한 농산물의 판매
- 2. 생산자단체등, 저장업자, 도 매업자·소매업자 등이 보유 한 농산물의 판매 지원
- 3. 취약계층을 위한 농산물 이 용권 지급
- 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

<u>제9조의2(</u>몰수농산물등의 이관) (생 략)

제10조(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 령) ① (생 략)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 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와 협<u>의</u>를 거쳐 일정 기 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 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 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 는 유통조절명령(이하 "유통명 령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<신 설>

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
여 노력하여야 한다.
제9조의3(몰수농산물등의 이관)
(현행 제9조의2와 같음)
제10조(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
령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</u> 협의한 후 수급조절
위원회의 심의
<u> </u>
제13조의2(비축사업 관리) ① 제1

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

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 품 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(이하 "위탁사업자" 라 한다)는 농산물 수입을 위 한 사전검토 사항, 수입 및 판 매 계획, 공급업체 선정,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에 대 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.

- ② 위탁사업자로부터 수입농산 물을 공급받은 자는 당해연도 국영무역 수입농산물판매실적 을 다음해 상반기까지 위탁사 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 안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 검을 실시하고, 그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

<신 설>

를 토대로 실수요자, 생산자,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탁사업자는 통보받은 의견수렴 결과를 다음연도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반영·판매실적·사업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2(농산물가격안정제도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,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제3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[평년 가격(직전 5년 중 최저가격을 과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 을 말한다. 이하 같다] 미만으 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(이하 "농산물가 격안정제도"라 한다)를 실시하 여야 한다. 다만, 농산물가격안 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 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 산된 품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,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약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농산 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

<신 설>

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(기준가 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 다. 이하 같다) 지급비율을 제1 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
제16조의3(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)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립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 한 대상 품목
- 2.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 <u>장가격</u>
- 3. 차액의 지급비율
- 4. 적정 재배면적,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
- 5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

- <u>하는 사항에 대한 선정 및</u> <u>확정 주기</u>
- 6.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부의하는 사항
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 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.
- 1.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

  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

   하는 공무원
- 2.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- 3.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 에 맞는 사람

제55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 략) 제55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 략)

- 1. 2. (생략)
- 3. 제9조의2제3항, 제16조제2항 3. 제9조의3제3항, -----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
- 4. (생략)
- ② (생략)

제57조(기금의 용도) ① (생 략)

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위하여 지출한다.
- 1. (생략)

<신 설>

2. 제9조, 제9조의2, <u>제13조</u> 및 2. -----<u>제9조의3</u>, 「종자산업법」 제22조에 따 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

2의2. (생략) <신 설>

3. ~ 5. (생 략)

③ ~ ⑤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-----

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1. 2. (생 략)

- 4. (생략)
- ② (생략)

|제57조(기금의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

- 1. (현행과 같음)
- 1의2.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
- 제13조-----

2의2. (현행과 같음)

2의3.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시행

- 3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90조(과태료) ① (생 략) 제90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#### <u>1.</u> ~ <u>3.</u> (생 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<신 설>

1. ~ 3. (생 략)

 3의2. (생 략)

 4. (생 략)

 4의2. (생 략)

 5. · 6. (생 략)

④ (생략)

- 1.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
  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
  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
   자
- 2. ~ <u>4.</u> (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)
- (3) -----
- 1.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
- 2. ~ 4. (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

<u>4의2</u>. (현행 제3호의2와 같음)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<u>5의2</u>. (현행 제4호의2와 같음)

- <u>6.</u> · <u>7.</u> (현행 제5호 및 제6호 와 같음)
- ④ (현행과 같음)